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개정이유

지방세법시행령이 2005.12.31개정되었고 임대주택법이 2005.7.13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며,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폐지(안제8조,안제19조)
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근거조항 정비 (안제9조)
-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정비(안제11조)
-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 재산세감면신설 (안제14조의2)
- 벤처기업의 재산세 면제 신설 (안제14조의3)

관련법규

- 지방세법제7조(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)
- 지방세법제181조
-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, 제132조
- 임대주택법 제12조
-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
- 화물유통촉진법제2조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

검토의견

- 조례안제8조 및 안제19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폐지는 2005. 12. 31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터미널 부지가 별도 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율이 인하되었고 우리구 여객상 터미널부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면규정의 폐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.
- 조례안제9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근거조항 정비는 2005.7.13 개정된 임대주택법 및 2005. 9. 16 개정된 임대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,

- 조례안제14조의2의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조례안 제14조의3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은 우리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
-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의 전액면제는 조례안 제14조의2의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50%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50%와 비교하여 조정할 수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6. 22

보고자 : 김 찬 재